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고금 관리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납세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고금 관리 대행기관인 한국은행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 관

정 종 섭

●**대통령령 제2553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피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600	1200	2400
-------------------------------------	--------------------	-----	------	------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유출 등을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